

2025년 강원 BRIDGE 매출 스케일업 사업화 지원 안내

2025. 9.

1 사업개요

- 사업명: 강원 BRIDGE 매출 스케일업
- 지원기간: 2025. 4. ~ 11.
- 사업대상: 센터 교육 및 네트워킹 사업 참여자 50명 내외
- 사업내용: 홍보 및 마케팅 분야 사업화 지원

2 세부내용

- 참여조건
 -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(사업자 등록이 완료된) 기업
 - 기준 포인트 이상 누적된 참여자(최소 50만 포인트 이상)
 - 위 조건 해당자 중 사업 신청 선착순
- 포인트 적립 가능 사업
 - 교육: 강원 BRIDGE 아카데미 사업
 - 네트워킹: 강원 BRIDGE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내 네트워킹 사업
 - 기타: 센터 내 포인트 적립 요청 사업 등
- 적립 포인트
 - 기본 1만 포인트(30,000) / 시간당
 - 사업 이수 완료 시, 시간별 포인트 적립

○ 추진절차

구분	기간	내용 / 세부내용
① 사업대상자 확인	2025. 5.~10. 월 1회	포인트 적립 인원 및 대상 확인 사업별, 부서별 프로그램 이수인원 조사 및 포인트 부여
② 신청안내	2025. 5.~10. 월 1회	사업화 지원 및 신청 안내 1포인트 누적 참여자 사업 신청 개별 안내
③ 검토 및 승인	2025. 6.~10. 월 1회	접수 및 신청 내역 검토, 승인 사업 신청자 서류 검토 및 수정요청, 승인
④ 협약 체결, 사업화 지원	2025. 6.~10. 월 1회	홍보 및 마케팅 분야 사업화 지원
⑤ 지출	2025. 6.~10. 상시	사업화 지원금 지출 지급신청 건 서류 검토·승인·지급
⑥ 지출 마감 및 이월	2025. 11.	지출 마감 및 포인트 이월 ※ 협약 후 미소진 금액은 이월 불가
⑦ 사업 종료	2025. 12.	결과보고 제출

2025년 강원 BRIDGE 매출 스케일업 사업화 집행 매뉴얼

2025. 9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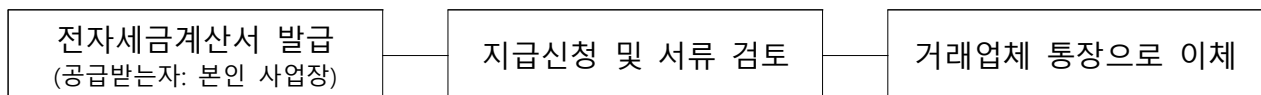
1 지출방법

○ 지원항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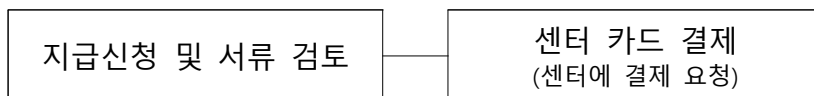
구분	세부내용
재료비	홍보·마케팅 분야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등을 구입하는 비용 예) 제품 패키징 재료(포장지, 포장끈) 등
광고비	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,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예) 팜플렛 인쇄 등
일반용역비	홍보·마케팅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예) 브랜드 디자인 제작 용역 등

○ 사업비 지급 방법

- 전자세금계산서(센터 거래업체)



- 카드결제(센터 직접집행)



※ 지급 관련 서류 미비 또는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등 지원 불가할 수 있음

○ 유의사항

- 홍보·마케팅 관련 사업에 대한 비용으로만 집행 가능
- 건당 50만원 이상 시 지출 가능(부가세 자부담)
- 기업 홍보를 위한 자산취득, 기기 및 장소 임차 등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
- 소진하지 않은 협약 금액은 이월 불가

2

제출서류

○ 사업 신청 서류

- 참가신청서 1부
- 사업자등록증 1부

○ 지급 요청 서류

- 공통서류
 - ① 지급신청서
 - ②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매출전표(영수증)
 - ③ 거래명세서(수령일 발급) 및 견적서(견적일 발급)
 - ④ (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) 업체 사업자등록증
 - ⑤ (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) 업체 통장사본
 - ⑤-1 (카드결제 시) 본인 사업장 통장사본
 - ⑥ 비목별 추가서류

구 분	내 용
재료비 / 광고비	검수조서, 결과보고서(필요시)
일반용역비	용역계약서, 과업지시서, 용역 결과보고서, 용역검수조서

※ 검수조서는 구매 물품 및 수량 확인이 가능한 사진 첨부 필수

- ⑦ 기타 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 등

○ 포인트 확인 방법

- 센터 홈페이지에 월 1회, 포인트 누적 대상자 명단 게시
- 누적내역 확인 링크: <https://url.kr/73x7kk>

※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○ 문의처: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혁신본부(033-248-7920)

또는 1:1 오픈 프로필 <https://open.kakao.com/o/sN7vOqSh>

별첨. 참가신청서

강원 BRIDGE 매출 스케일업 지원 신청서

신청인	성명			
	생년월일		성별	
	주소			
	휴대전화		e-mail	

소속(기업명)		직위	
---------	--	----	--

사업자등록번호		사업장 소재지	
---------	--	---------	--

사업 내용	
-------	--

홍보 · 마케팅 계획	구분	세부내용	사업비
	☐ 재료	홍보 · 마케팅 분야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등을 구입하는 비용 예) 제품 패키징 재료 등	0
	☐ 광고	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,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예) 팸플렛 인쇄 등	0
	☐ 일반 용역	홍보 · 마케팅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예) 브랜드 디자인 제작 용역 등	0
	합계		0

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, 붙임 서류와 같이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불임 사업자등록증 1부

동의서 1부

2025년 올해 일일

신 청 자: (서명/인)

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귀하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

2025년 강원 BRIDGE 매출 스케일업 주관기관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규정 등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,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에는 참가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개인정보 수집.이용 목적

-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25년 강원 BRIDGE 매출 스케일업 사업 참가 신청 및 참가자 관리, 선정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2.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: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등

3. 개인정보 이용 목적

- 신청자 및 사업 관리, 지원사업 안내 및 지원 등

4. 이용 또는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

- 성명, 주소, 연락처, 생년월일, 이메일 주소, 소속, 등 개인 식별정보

5.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거부의 권리

-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음. 다만,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강원 BRIDGE 매출 스케일업 사업 참여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수집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
- 수집된 참가자의 개인정보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목적 외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.

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확인하였으며
상기 내용에 동의합니다.

2025. . .

신청자

(인)

별첨. 협약서

2025년 강원 BRIDGE 매출 스케일업 수행 협약서

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(이하 “관리기관” 이라 한다)와 000(이하 “수행자” 라 한다)은 「2025년 강원 BRIDGE 매출 스케일업」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- ☐ 사 업 명 : 2025년 강원 BRIDGE 매출 스케일업
- ☐ 협약당사자 : (관리기관) (재)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
(수 행 자) 000
- ☐ 협약기간 : 2025년 9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
- ☐ 협약사항 : 기업 홍보·마케팅 분야 사업화 지원
- ☐ 사업비 세부내역

(단위: 원)

항목	내용	금액
홍보비	0,000,000 X 1인	0,000,000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의 목적은 2025년 강원 BRIDGE 매출 스케일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.

제2조(신의성실 의무) “관리기관” 과 “수행자” 는 신의를 가지고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(사업비의 관리)

- ① “관리기관” 은 “수행자” 가 사업비 지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2주 이내에 사업비를 교부해야 한다. 단 증빙서류가 “관리기관” 의 요청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시 이를 반려할 수 있다.
- ② “수행자” 의 지급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업기준에 준거하지 않는다고 여겨질 경우 “관리기관” 은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
- ③ “수행자” 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보고서를 “관리기관”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협약 후 소진하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는 차년도 협약금액, 포인트 등으로 이월할 수 없다.

제4조(소유 권리 등) 협약에 따라 사업비로 진행한 디자인 등의 결과물 일체의 소유 권리는 “수행자”에 귀속되며, 이를 성실히 관리할 의무를 지닌다.

제5조(협약의 해지) “관리기관”은 협약 내용의 중대한 위반 및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약 시 이미 지급한 사업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.

제6조(협조의무)

- ① “관리기관”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“수행자”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- ② “수행자” 및 참여 청년은 사업에 필요한 교육 등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.

제7조(준용)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, 관계 법령,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을 따른다.

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“관리기관”, “수행자”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5년 9월 1일

(관리기관)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이 해 정 (인)

(수행자) O O O (인)